

## 농업 작업장에서의 직장내 폭력 예방 - 고용주를 위한 정보

본 사실 자료는 2023년 9월 30일에 법으로 된 **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553(SB 553)**에 대한 개요입니다. SB 553은 노동법 제6401.7절을 개정하여 직장내 폭력 예방 계획의 요건을 명시하는 새로운 노동법 **제6401.9절**에 따라 고용주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. 2024년 7월 1일부터는, 농업 사업체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직장내 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, 시행 및 유지해야 합니다:

- 근로자에 대한 보복 금지.
- 직장내 폭력 신고 접수 및 대응.
- 직원 대상 직장내 폭력 교육 및 소통.
- 비상 대응.
- 직장내 폭력 위험요소 평가.
- 폭력 사건 일지의 유지와 같은 기타 요건.

###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SB 553은 무엇입니까?

모든 고용주와 직원은 농업 작업장을 포함한 모든 고용 장소 및 고용주가 제공한 주택에서 노동법 제 6401.9절의 (b)절에 나열된 경우를 제외하고 SB 553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
이 사실 자료는 단지 개요만 보여줍니다. 고용주는 노동법 제6401.9절을 포함하는 **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553(SB 553)**의 전체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.



### 직장내 폭력 예방 계획 수립

노동법 제6401.9절에는 제6401.7절에서 요구하는 직장내 폭력 예방 계획의 요소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:

- 모든 적용 대상 고용주는 효과적인 직장내 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, 실행 및 유지해야 합니다.
-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:
  - 계획의 실행을 책임지는 사람의 이름.
  - 계획의 개발 및 실행에 직원의 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.
  - 해당되는 경우, 다른 고용주와 계획의 실행을 조율하는 방법.
  - 신고한 직원에 대한 보복이 없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고용주가 직장내 폭력 신고를 처리하고 대응하는 절차.
  - 감독자를 포함한 직원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.
  - 직장내 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직원과 소통하는 절차.
  - 응급 대응조치 방법.
  - 교육 규정.



## 폭력 사건 일지의 요건

고용주는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직장내 폭력 사건에 대한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. 이 일지에는 직원의 진술서, 목격자 진술서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직장내 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. 사건 정보는 다음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: Incident date, time, location.

- 사건 날짜, 시간, 장소.
- 직장내 폭력의 “유형”(1, 2, 3 및/또는 4).
-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.
- 폭력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분류.
-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.
- 사건이 발생한 장소.
- 신체적 공격, 무기의 사용, 협박, 성폭행, 동물 사건 또는 기타 사건 등 구체적인 사건의 특성.
- 법 집행 기관의 개입을 포함한 사건의 결과.
- 추가적인 위협이나 위협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절차.
- 이름, 직책, 작성 날짜 등 일지를 작성한 사람의 정보.

참고: 고용주는 반드시 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신상 정보를 제외해야 합니다.

- 직장내 폭력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주기의 점검을 포함합니다:
  - 계획이 처음 수립될 때.
  - 주기적으로 예정된 때.
  -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.
  - 언제든지 새로운 위험요소를 발견하는 때.
- 식별 및 평가한 직장내 폭력 위험요소를 적시에 시정하는 절차.
- 사건 발생 후 대응 및 조사 절차.
- 계획 검토를 위한 절차:
  - 매년.
  - 문제를 발견했거나 명백해졌을 때.
  - 직장내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.
-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국(Cal/OSHA) 및 표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기타 모든 절차.
- 계획은 반드시 항상 그리고 모든 작업 영역에서 유효해야 하며 각 작업 영역 및 작업에 대한 위험요소와 시정 조치에 대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.
- 서면으로 작성한 해당계획을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**3203**절에서 요구하는 서면으로 작성한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에 분리된 항목으로 포함시키거나 또는 독립된 개별 문서로 따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## 직장내 폭력에 대한 직원의 교육

- 고용주는 반드시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 자료가 이해하기 쉽고 근로자의 교육 수준, 읽기 능력 및 언어에 적합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.
-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최초 교육을 해야하고 그 이후로는 매년 재교육을 해야 합니다.
- 교육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어야 합니다:
  - 해당 계획, 사본을 받아 보는 방법, 그리고 해당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.
  - 노동법 제6401.9절의 정의 및 요건.
  -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직장내 폭력 사건을 신고하는 방법.
  - 업무별로 구체적인 폭력의 위험요소 및 예방 조치에 대한 이해.
  - 폭력 사건 일지의 목적 및 관련 기록을 입수하는 방법.
  - 고용주의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서로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.
- 새로운 또는 기존에 확인된 직장내 폭력 위험요소가 발견될 때나 계획에 변경 사항이 생기는 때에는 고용주는 반드시 특정한 위험요소나 또는 계획의 수정 사항에 중점을 맞춘 추가 교육을 해야 합니다.

## 고용주가 직장내 폭력 기록의 보관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

- 계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직원,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의 대표자 및 Cal/OSHA 담당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직장내 폭력의 위험요소의 식별, 평가 및 시정 기록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
- 교육 기록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최소 1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.
- 폭력 사건 일지는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.
- 직장내 폭력 사건 조사 기록은 반드시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.



## 추가 정보 및 자원

**제8편, 제342조(a) 업무와 관련한 사망 및 심각한 부상에 대한 신고**에 규정된 바와 같이, 고용주는 직장에서 발생했거나 고용과 관련된 직원의 모든 중상, 중병, 또는 사망(직장내 폭력으로 인한 경우 포함)을 즉시 Cal/OSHA에 신고해야 할 법률적인 책임이 있습니다.

직장내 폭력 및 노출에 적용될 수 있는 추가 규정은 다음 제8편의 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:

- **제342절** (업무 관련 사망 및 심각한 부상의 신고).
  - 신고에 관한 지침은 업무 관련 사고의 **신고 - 고용주(Report a Work-Related Accident - Employers)**에서 확인하십시오.
- **제3203절**(부상 및 질병 예방).
- **제14300절**(고용주 기록-일지 300).
  - 업무 관련 부상 및 질병 일지(Cal/OSHA 양식 300)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**기록 보관 요건에 대한 간략한 안내**를 참조하십시오.

수신자 부담 전화: 1-800-963-9424

인터넷: [www.dir.ca.gov](http://www.dir.ca.gov)

## 현장 지원 프로그램 영역 사무소



2024년 2월

